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
----------	----

제 출 일 : 2026. 8. 31.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도시브랜드(BI) 변경에 수반되는 행정절차 소요를 최소화해 정책·행사·홍보물 등 시민 접점 중심으로 슬로건을 탄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실용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양주시 상징물 중 도시브랜드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조)

3. 참고사항

- 부서협의 결과
 - 비용추계 : 미첨부 사유서 붙임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6. 7. 15. ~ 8. 4.(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조례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시가: 별표 4
5. 시의 나무: 소나무
6. 시의 꽃: 개나리
7. 시의 새: 크낙새

제7조제2항 중 “제3조제2호부터 제4호”를 “제3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표 3 및 별표 4로 하고, 별표 3(중전의 별표 4) 중 “제3조제4호”를 “제3조제3호”로 하며, 별표 4(중전의 별표 5)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홍보담당관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홍보담당관 원 경 희
	팀장 직위·성명	홍보기획팀장 김 소 라
	담당자 성명·전화	김 대 현 (031-590-210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1. 시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2. 문장: 별표 2		
3. 도시브랜드: 별표 3		3. 캐릭터: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4. 시가: 별표 4		
5. 시가: 별표 5		5. 시의 나무: 소나무		
6. 시의 나무: 소나무		6. 시의 꽃: 개나리		
7. 시의 꽃: 개나리		7. 시의 새: 크낙새		
8. 시의 새: 크낙새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규 정된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안내서 등 관련 규정집을 따른 다.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 ----- ----- --.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 리상 목적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 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 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 ----- 제3조제2호 및 제 3호의 ----- ----- ----- -----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 첨부 사유

○ 상징물의 종류 중 도시브랜드를 삭제하고 관련 별표 및 인
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에 불과해 재정 수반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홍보담당관 원경희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인쇄 : 김대현 / 홍보담당관 (2026-07-27 10:27:58)



남 양 주 시

수신 홍보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6A경기남양034)

1. 홍보담당관-7014(2026. 7. 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6A경기남양034) 1부. 끝.

여 성 아 동 과 장 배진위.

주무관	이연희	여성정책팀장	출장	여성아동과장	2026. 7. 14. 배진위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21363	(2026. 7. 14.)	접수	홍보담당관-7032	(2026. 7. 14.)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별관4층 여성아동과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 yhle0127@korea.kr	/ 비공개(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남양034			
정 책 명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홍보담당관		
	담당자명	김대현	전화번호	031-590-210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7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홍보담당관)	○ 도시브랜드(BI) 변경에 수반되는 행정절차 소요를 최소화하여 정책·행사·홍보물 등 시민 접점 중심으로 슬로건을 탄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실용성을 도모 ○ 남양주시 상징물 중 도시브랜드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7월 14일				
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홍보담당관장 귀하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인쇄 : 김대현 / 홍보담당관 (2026-07-27 10:31:37)



남 양 주 시

수신 홍보담당관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6-32)

홍보담당관-7015(2026. 7. 14.)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감 사 관 직 부 대 령 박호영

주무관

송호림

청렴윤리팀장

이정주

감사팀장

대결 2026. 7. 14.
박호영

협조자

시행 감사관-7963

(2026. 7. 14.)

접수 홍보담당관-7029

(2026. 7. 14.)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3층 감사관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rims@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남양주-32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평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송호림
입 안 부 서	홍보담당관	입 안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김대현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6. 7. 14.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2026년 7월 14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 (담당자 / 연락처 : 송호림 / 031-590-4719) 홍보담당관 귀하			

붙임4 규제심사 결과



남 양 주 시

수신 홍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1. 홍보담당관-7015(2026. 7. 14.)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우리 시의 비전을 표출하는 방식인 상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3.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끝.

의 회 법 무 과 

주무관	조현기	규제개혁팀장	안재현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2026. 7. 14.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8311	(2026. 7. 14.)	접수	홍보담당관-7030	(2026. 7. 14.)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별관 4층 의회법무과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gj1235@korea.kr	/ 비공개(5)	

붙임5 입법예고 결과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1. 홍보담당관-7085(2026.7.15.)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7. 15. ~ 2026. 8. 4. /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주무관

김대현

홍보기획팀장

김소라

홍보담당관

전결 2026. 8. 5.

원경희

협조자

시행 홍보담당관-7857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2109

팩스번호 031-590-2069

/ ehdhkd@korea.kr

/ 비공개(5)